무죄 선고 요청 시민 탄원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귀중

사건번호: 2026고합578 | 제1심

피고인: 최재혁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

관련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 판사님께.

저는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사건을 지켜보는 시민으로서 최재혁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단을 정중히 탄원합니다. 공적 감사가 사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의도적인 사실 은폐가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 결과에 대한 비판과 특정 공무원에게 형사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만큼은 전체 논란의 크기보다 피고인이 실제로 한 일, 그때 알았던 내용, 그 행위가 초래한 결과를 차분히 구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공소장 최신본과 공판조서, 전자결재 원본을 직접 확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에 피고인의 무고함이 이미 밝혀졌다고 주장하거나 특검의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개된 기소 및 공판 보도와 확인된 판례에 비추어, 유죄 인정에는 개별 구성요건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1. 두 혐의의 출발점은 같아도 판단해야 할 사실은 다릅니다

공개된 기소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2024년 5월 10일 감사위원회가 관저 이전 감사 결과의 의결을 보류한 뒤에도 기존 결론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최재혁 피고인에게는 같은 해 6월 21그램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관련 내용을 감사보고서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8월 왜곡된 진술자료·보고서 등을 이용해 감사위원회의 직무를 방해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검사의 공소 주장이지, 본 탄원서가 확정된 사실로 인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두 혐의는 서로 연결되어 보일 수 있어도 법적으로는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무 없는 행위를 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보고서 일부가 부정확하다는 사정만으로 감사위원회를 속이려는 고의와 직무방해의 결과까지 곧바로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 지시의 정확한 상대방·문구·시점과, 문제 된 자료의 작성·수정·전달 과정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2. 직권남용에는 직권의 남용과 별도의 결과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123조에 관한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은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와, 그 결과 상대방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실제로 하였거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를 구별합니다. 나아가 그 결과가 직권남용 행위로 발생하였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상급자의 검토·수정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을 완결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시를 받은 실무자가 누구였는지, 그 사람이 감사보고서 작성 및 법령 검토에 관하여 원래 부담하던 의무가 무엇인지, 실제로 수행한 일이 그 의무를 벗어난 것이었는지, 피고인의 지시와 그 결과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허위의 결론을 알면서 강제하거나 법령상 기준·절차를 위반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단순한 내부 지시로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더욱 결과만이 아니라 실제 지시와 수행 행위를 정확하게 가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3. 보고받은 사실과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사실을 혼동하지 말아 주십시오

관저 공사 관련 법률 검토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 초안이 피고인에게 실제 보고되었는지, 보고되었다면 어떤 내용과 조건이 함께 전달되었는지를 분리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법 가능성에 관한 문제 제기를 접했다는 사실과 구체적 위반 사실 및 특정 기재의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언제나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알고 있는 사실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왜곡했다면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인식은 직책이나 추상적인 보고체계에서 자동으로 추정하기보다 원본 검토 의견, 발송·열람 이력, 결재 기록, 수정 지시의 표현, 관련자들이 실제 들은 내용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초 문구와 최종 문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누가 변경을 요청·실행했는지, 피고인에게 다시 보고되었는지도 서로 다른 확인 대상입니다. 다른 실무자의 지식과 판단을 피고인의 고의로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4. 감사위원회에 대한 위계는 구체적인 오인과 공무집행 방해로 이어져야 합니다

형법 제137조와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583 판결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그릇된 행위·처분 또는 구체적인 직무집행의 저지·현실적 곤란을 문제 삼습니다. 그 판결의 귀화허가 사건과 본 감사 사건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법리의 기준을 적용하되 결과를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에 제출된 어느 부분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피고인이 그 부분의 생성·수정·제출에 관여하며 허위성을 인식했는지, 위원들이 그 기재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오인했고 어떤 판단이나 직무집행이 영향을 받았는지를 이어서 살펴야 합니다. 자료에 일부 오류가 있어도 위계에 따른 현실적 방해가 생겼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반대로 감사위원들이 일부 논란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남은 중요한 정보에 관한 기망 가능성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5. 불리한 정황을 외면하지 않되 개별 증거의 의미를 구분해 주십시오

특검이 지적한 보류 결정 후 같은 결론의 유지, 대면조사 전 보고서 초안 작성, 관계자의 진술 변화, 결재 순서 조정 및 주심 감사위원 배정 경위는 모두 가볍지 않은 의혹입니다. 실제로 특정 결론을 먼저 정해 놓고 자료를 맞추거나 조사 절차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면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정황을 인정하는 것과 그것을 최재혁 피고인의 구체적 지시·고의·범죄 결과로 귀속시키는 데에는 증명의 단계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가령 보고서 초안의 작성 시점은 통상적 작성 과정과의 비교가 필요하고, 진술 변경은 최초·수정 진술과 녹음·메모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결재 순서나 주심 배정 문제도 제도의 실제 작동 방식, 변경을 지시한 사람, 변경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5월 10일 보완 요구 사항과 후속 조사 결과, 최초·수정 보고서의 차이, 전자결재 이력 및 직접 관여자의 증언이 서로 부합하는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귀속될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6. 결어 – 한 사람의 형사책임은 증명된 행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에서 감사의 공정성을 지키는 일과 피고인의 무죄추정 원칙을 지키는 일은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잘못이 있다면 엄정하게 밝혀야 합니다. 동시에 한 사람에게 중대한 형사책임을 지우려면 그가 실제 지시하고 인식한 내용, 상대방에게 발생한 의무 없는 행위, 감사위원회의 직무집행에 미친 영향을 각각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디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평가가 아니라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를 토대로 최재혁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주십시오. 어느 혐의든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그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탄원합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믿습니다.

탄원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날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생년월일: _____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귀중